

BC주 및 연방 영양급여 프로그램 개요

BC주 영양급여 프로그램

BC주 영양급여는 BC주 고용및지원프로그램(BC Employment and Assistance Program)을 통한 보건보조금및프로그램(Health Supplements and Programs)의 일부입니다. 영양급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인스턴트 조제분유 등의 영양보조금
- ┆ 식이요법보조금
- ┆ 월급영양보조금
- ┆ 경관영양보조금
- ┆ 출산보조금

수혜 자격 및 신청 절차 관련 정보:

<https://www2.gov.bc.ca/gov/content/governments/policies-for-government/bcea-policy-and-procedure-manual/health-supplements-and-programs/>

BC주 영양급여 프로그램 급여요율표:

<https://www2.gov.bc.ca/gov/content/governments/policies-for-government/bcea-policy-and-procedure-manual/bc-employment-and-assistance-rate-tables/health-supplements-and-programs-rate-table>

A. 영양보조금

정책:

<https://www2.gov.bc.ca/gov/content/governments/policies-for-government/bcea-policy-and-procedure-manual/health-supplements-and-programs/nutritional-supplements>

영양 보충제

소득지원 또는 장애지원 수급자 또는 그 피부양 자녀는 최장 3개월간 다음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칼로리 보충(Boost®, Ensure®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수술

- ┆ 증상
- ┆ 중병
- ┆ 치료 부작용

영양 보충제를 식품 대체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의사, 임상간호사 또는 공인영양사가 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는 진단명, 해당 제품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제품의 명칭, 필요한 제품의 양,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 견적, 예상 필요 기간(최장 3개월)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클라이언트 거주지 관할 고용및소득지원사무소(Employment and Income Assistance Office)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인스턴트 조제분유

소득지원 또는 장애지원 수급자는 다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영유아용 일반 조제분유 –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가 모유 수유를 통해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을 경우
- ┆ 영유아용 특수 조제분유 – 질병이 있는 영유아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특수 조제분유

신청 방법: 의사, 임상간호사 또는 공인영양사가 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는 필요한 제품의 명칭, 필요한 제품의 양, 예상 필요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클라이언트 거주지 관할 고용및소득지원사무소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B. 식이요법보조금

정책:

<https://www2.gov.bc.ca/gov/content/governments/policies-for-government/bcea-policy-and-procedure-manual/health-supplements-and-programs/diet-supplements>

소득지원 또는 장애지원 수급자는 특수한 식이요법을 따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식이요법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식이요법 또는 질병에 대한 상한액(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금 제한 식이요법: \$10.00
- ┆ 당뇨병: \$35.00

- | 신장 투석: \$30.00
- | 무글루텐 식이요법: \$40.00
- | 삼킴곤란 식이요법: \$40.00 (블렌더 구입 지원금으로 \$30.00을 받을 수도 있음)
- | 케톤 생성 식이요법: \$40.00
- | 저페닐알라닌(PKU) 식이요법: \$40.00
- | 낭포성섬유증: \$50.00
- | 고단백 식이요법: \$40.00 (블렌더 구입 지원금으로 \$30.00을 받을 수도 있음)
 - | 고단백 식이요법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는 다음 중 하나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n 방사선 치료, 화학치료, 수술, 지속 치료 등을 받을 때 영양적 지원이 필요한 암
 - n 만성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 n HIV/에이즈
 - n 만성 세균 감염
 - n 결핵
 - n 갑상선기능항진증
 - n 골다공증
 - n B형 또는 C형 간염

주의: 위의 질병 중 두 가지 이상이 병존할 경우, 수급 자격이 있는 식이요법 급여 중 가장 큰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의사, 임상간호사 또는 공인영양사가 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는 특정적인 질병 명칭, 필요한 식이요법, 예상 필요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클라이언트 거주지 관할 고용및소득지원사무소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C. 월급영양보조금(MNS))

정책:

<https://www2.gov.bc.ca/gov/content/governments/policies-for-government/bcea-policy-and-procedure-manual/health-supplements-and-programs/monthly-nutritional-supplement>(MNS 신청서 포함)

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ies - PWD) 지정을 받은 장애지원 수급자는 월급영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에 관해 알아보려면 관할 고용및소득지원사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의사, 임상간호사 또는 공인영양사가 다음 내용이 모두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동 클라이언트는 만성적인 진행성 건강 악화를 유발하는 중대한 질환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음 증상 중 두 가지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 영양실조
 - 저체중
 - 현저한 체중 감소
 - 현저한 근육량 손실
 - 현저한 신경 퇴행
 - 현저한 중요 장기 퇴화
 - 중등도 내지 중증 면역억제
2. 이러한 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동 클라이언트는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를 요한다:
 - 정상적 식단을 보충하는 추가 식품
 - 비타민 및 미네랄
3. 이러한 물품을 구할 수 없을 경우, 동 클라이언트의 생명이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MNS는 클라이언트의 가족이 해당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정상적 식단을 보충하는 MNS 추가 식품을 수급하는 클라이언트는 식이요법보조금 또는 영양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MNS 비타민 및 미네랄을 수급하는 클라이언트는 식이요법보조금 또는 영양보조금만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D 경관영양보조금

정책:

<https://www2.gov.bc.ca/gov/content/governments/policies-for-government/bcea-policy-and-procedure-manual/health-supplements-and-programs/tube-feed-supplement>

소득지원 또는 장애지원 수급자는 구강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거나 위장관계를 통해 음식을 소화할 수 없을 경우에 경관영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급성 단기 또는 만성 장기 질환에 대해 지급될 수 있으며, 동 클라이언트에 적용되는 다른 정부 재정 지원 프로그램 또는 기타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의사, 임상간호사 또는 공인영양사가 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는 신청자의 주 영양 공급이 경관영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필요한 영양제의 종류, 필요한 영양제의 일간 또는 월간 소요량, 경관영양을 요하는 상태의 예상 지속 기간, 필요한 경관영양 장비/비품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경관영양보조금 수급자는 기타 영양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 출산보조금

정책:

<https://www2.gov.bc.ca/gov/content/governments/policies-for-government/bcea-policy-and-procedure-manual/health-supplements-and-programs/natal-supplement>

임신 중인 클라이언트와 생후 7개월 미만 피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은 출산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임신 및 신생아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임신 확인 시점부터 산후 6개월까지 출산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되도록 일찍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의사, 임상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클라이언트 거주지 관할 고용및소득지원 사무소로 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임신 사실, 예상 분만일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추가적 정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사회개발빈곤퇴치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지역 사무소 관련 정보는 웹페이지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Poverty Reduction \(MSDPR\) Contacts](#)를 방문하거나 1-866-866-0800으로 전화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0

<https://www2.gov.bc.ca/gov/content/governments/organizational-structure/ministries-organizations/ministries/social-development-poverty-reduction/ministry-contacts>

First Nations Health Authority 보건급여 프로그램

각종 급여, 수급 자격, 보장되는 서비스 등에 관해 알아보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 [First Nations Health Authority](#) 웹사이트 <http://www.fnha.ca/benefits>
- | 전화 1-855-550-5454
- | 이메일 HealthBenefits@fnha.ca
- | 직접 대면 문의: 1166 Alberni St, Room 701, Vancouver B.C.

현재 처방 의약품, 의료 기구 및 장비, 시력 및 눈 관리, 의료 수송, 치과 진료/치과 교정 급여, 위기 개입 등 특정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coverage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방 영양급여 프로그램

캐나다 보훈처 (Veterans Affairs Canada - VAC) 영양급여

정책: [Veterans Independence Program](#) 재향군인독립프로그램) - 캐나다 보훈처

재향군인은 본인의 보장 수준에 따라 경관영양 장비 및 유동식, 또는 구강 영양 보충제를 사용한 칼로리 보충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수급 자격 기준은 재향군인 분류에 따라 다르며, 수급 자격은 건별로 평가됩니다.

클라이언트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 다음이 명시된, 주치의가 서명한 편지
 - | 현재 앓고 있는 질환
 - | 영양적 필요
 - | VAC가 발급한 보건의료신분증(Health Care Identification Card)에 기재된 클라이언트의 'K 번호'
- | 필요한 영양 보충제 및 비품에 대한 서면 처방전

해당 클라이언트는 위의 편지 및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야 합니다. 약사는 동 정보를 VAC 의료승인센터(Medical Authorization Centre) 및/또는 약국특별승인콜센터(Pharmacy Special Authorization Call Centre)에 직접 팩스로 발송합니다.

재향군인독립프로그램(Veterans Independence Program - VIP)에 속한 재향군인은 VIP에 연락하여 영양 프로그램 이용에 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은 1-866-522-2122로 전화하여 동 프로그램에 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 자원

여러분의 특정한 식품 및 영양 관련 필요와 선호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구하려면 8-1-1로 전화하여 HealthLink BC 영양사를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영양사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주고, 여러분의 모국어로 된 자료를 안내해줍니다.

8-1-1은 요청에 따라 130여 개 언어로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1-1로 전화하면 영어로 말하는 보건 서비스 안내자와 연결됩니다. 다른 언어로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언어명만 말하면(예: '한국어'/'Korean') 통역이 3자 통화로 통역해줍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 HealthLink BC www.healthlinkbc.ca – 의학적으로 승인된 비응급 보건 정보

이 자료들은 발간 당시 신뢰도 있고 정확한 것으로 믿어지는 추가적 정보의 출처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특정 정보, 서비스, 제품 또는 회사의 홍보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

문서로 배포:

BC주 주민 및 보건 전문가들에게 영양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HealthLinkBC 영양사서비스(Dietitian Services, 구 Dial-A-Dietitian). 웹사이트 www.healthlinkbc.ca/healthyeating 을 방문하거나 8-1-1(BC주 전역)로 전화하십시오. 130여 개 언어의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